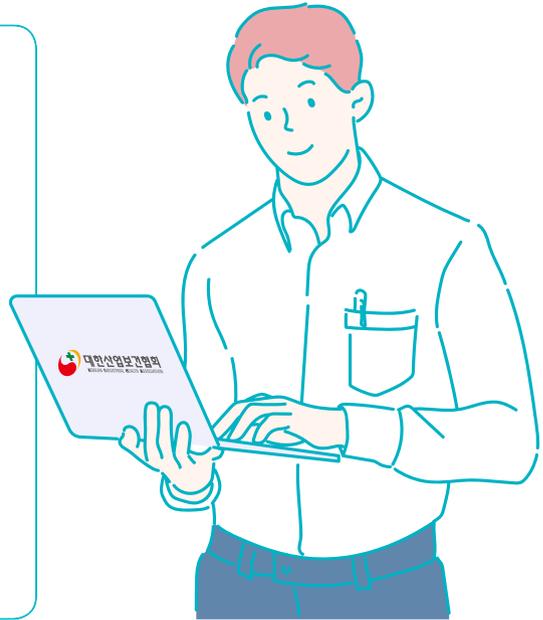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중대재해처벌법』

- 12월 들어가며
- 1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취지에 대한 기본적 관점
- 2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1. 정의,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 3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3. 도급과 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 4. 경영책임자의 처벌, 5. 법인 등의 처벌)
- 4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6. 인과관계의 추정, 7. 손해배상의 책임, 8. 벌칙의 하한형 설정)
- 5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1. 경영책임자 개념의 불명확 및 불합리)
- 6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2.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
- 7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3. 평등의 원칙 또는 죄형균형의 원칙 위반)
- 8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4. 불명확개념의 다수 사용으로 인한 혼란)
- 9월 맺으며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3. 평등의 원칙 또는 죄형균형의 원칙 위반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죄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위반내용, 예컨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의 위반은 산안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이다. 산안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구성요건요소(위반행위)보다 죄질이 무겁거나 비난 가능성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는 그 성격상 해당 관계법령에 이미 개선·시정 명령 등이 규정되어 있어 관계법령의 조치의무와



그 의미가 동일한 내용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¹⁾가 산안법령을 포함한 관계법령에 이미 관리상의 조치의무가 상당히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성격상 산안법령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못할 것(즉 산안법령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다분히 중복될 것)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대부분은 산안법 등 안전보건관계법과 그 내용, 성격 및 보호법의 등에 있어 질적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위반 행위에 대해 산안법상의 위반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할 규범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영책임자가 산안법 등 안전보건관계법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한다. 하지만 산안법 등 안전보건관계법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어느 법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수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또한 형법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보호 대상으로 보더라도 산안법은 수급인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제2조 제7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산안법과 달리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신분에

경영책임자가 산안법 등 안전보건관계법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한다.

1)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깊이 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있는 자,²⁾ 위임관계에 있는 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을 근로자와 비교할 때 보호 필요성, 불법의 정도, 비난 가능성 등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산안법보다 오히려 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에 반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3장(중대시민재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제조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기존의 다른 안전보건관계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과 산안법 등 다른 안전보건관계법의 규정이 불법의 정도, 죄질 및 비난 가능성에 있어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른 안전보건관계법보다 법정형을 더 무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안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계법 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의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만일 별도의 구성요건 표지의 추가 없이 법정형만을 가중하려고 하면 일반 안전보건관계법의 법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안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계법
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의
구성요건 표지를
추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2)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경우 산안법은 9개 직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형을 올리면 되지 따로 특별법(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³⁾

법정형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위반의 내용, 방법, 결과 발생의 정도 등 가중 처벌의 규범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법의 피적용자가 과잉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범행방법, 신분⁴⁾ 등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 없이 산안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법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의 처벌조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⁵⁾

3)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19·23(병합) 결정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결정 참조.

4) 산안법이 중대재해법처벌과 달리 의무주체(위반행위자)를 경영책임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벌규정의 행위자 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중요한 의무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책임자라는 신분이 양법 간에 차이가 있지는 않다(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5) 헌재결 2019.2.28. 2016헌가13; 헌재결 2015.9.25. 2014헌바154·398, 2015헌가3·9·14·18·20·21·25(병합); 헌재결 2004.12.16. 2003헌가2 전원재판부 참조